

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(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)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[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]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‘폐문부재’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10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



1. 건 명 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 미신고 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과태료부과 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주식회사세이 (현장: 상계동1025-32(A필지) 공동주택 신축공사)	135811-0*****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91번길 17, 302호 (인계동)	김**	5,000,000원 (2025.8월분~2025.12월 총 5개월 각 1,000,000원)	과태료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

4. 공고기간 : 2026. 9. 11. ~ 2026. 9. 25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3과 안기연(Tel: 02-950-97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